

#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## 주 의 요 구

제 목 풀베기사업 적기 미실행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구

내 용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(산림청 훈령 「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」)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.

「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」 Ⅲ-1-나에서 지역별로 풀베기 작업 권장시기를 정하여 조림목에 대한 조림 성공률 제고 및 경제적·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해 아래 [표1]과 같이 풀베기 작업시기를 일반적으로 1회 실행지는 5월~7월에 실시하고, 2회 실행지의 경우는 8월에 추가로 실시하고, 9월 초순 이후의 풀베기는 피하도록 하고 있다.

[표1] 지역별 풀베기 작업 권장시기

지 역 별	풀베기 권장시기	비 고
온대 남부	5월 중순 ~ 9월 초순	
온대 중부	5월 하순 ~ 8월 하순	
고산 및 온대북부	6월 초순 ~ 8월 중순	

또한 울산광역시 2013년~2017년 녹지·공원·산림사업 추진시책(산림분야/산림자원/숲가꾸기)에서도 풀베기 사업 1회 실행지는 5월~7월, 2회 실행지(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, 특히 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)는 8월에 추가 실행하여 조림목의 피해방지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고 있다.

그러나 울산광역시 ○구청은 아래 [표2]와 같이 61개소 64.02ha의 풀베기 사업을 9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 실행한 사실이 있다.

[표2] 풀베기 사업 지연 실행내역

구군별	연도별	개 소	실행면적 (ha)	계약방법	계약자명 (업체명)	현장 대리인	사업비 (원)	계약기간	준공일자
	계	61개소	64.02				55,397,000		
○ 구	2013	○○동 산00-0외 16	16.88 (8.44×2)	수 의	○○○ (주○○개발)	○○○	14,132,000	2013.8.26. ~2013.10. 8.	2013.10. 8.
	2014	○○동 산000-0외 6	7.14	경쟁입찰	○○○ (주○○산림)	○○○	4,993,000	2014. 8.27. ~2014. 9.25.	2014. 9.25.
	2017	○○동 산00-0외 36	40 (20×2)	경쟁입찰	○○○ (주○○임업)	○○○	36,272,000	2017. 8.24. ~2017.11. 9.	2017.11. 9.

※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**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울산광역시 ○구청장은**

[주의] 풀베기 사업은 9월 이전에 완료하여 사업 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시고,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